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버스 이용과 관련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는 「철도안전법」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(性的)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제재할 수 없어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여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으므로 운전사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마을버스 안에서 성적(性的)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,
-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